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4238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0. [redacted]시 [redacted]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의 25/100를 경감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20.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코목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이다.

2)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현행 지방세특례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한법'이라 한다) 제20조는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제1호 본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제2호)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제1호 본문),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25/100를 경감하는 것으로(제2호) 되었는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르면 적어도 취득세의 50/100을 경감받을 수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25/100만을 경감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4. 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만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위 조항이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면서 부동산 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그와 같이 개정한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 있고, 이는 위 개정법률의 개정이유에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제1호 본문은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양로시설, 경로당 외에 취득세가 면제되는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아직까지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시행령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특례조항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여기에다 위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개정된 취지가 국가 등의 위탁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대신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100이었던 경감비율을 25/100로 축소하는 데 있는 점(개정이유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정경희

판사 이승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코.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